

# 의안 검토 보고

의안 번호	제 225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1. 10. 18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## 1. 검토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청결책임제를 구체화 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처리의 민·관 협력방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(1) 토지·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·건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함. (안 제4조)
- (2) 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의1)
- (3)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자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의2)
- (4) 긴급재난시 자치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자치구간 지원 요청 또는 협력근거를 규정함. (안 제8조의1)
- (5) 구청장은 긴급재난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할 구역안의 민간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 (안 제8조의2)

## 2. 검토결과

□ 토지·건물 소유자등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구체화 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처리에 따른 다른 자치구 및 민간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을 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### □ 주요내용은

-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등의 청결유지 책무 명시(안 제4조)
- 청결유지 미이행자에게 1개월 범위내에 청결유지 조치토록 명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의1 신설)
- 토지·건물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명령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후 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의 2)
- 구청장은 폭우, 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 여건변동,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때 인근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음. (안 제8조의1 신설)
- 구청장은 폭우, 폭설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민간 대행업체간 인력장비등 지원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의2 신설)

### □ 검토의견

- 조례안 제4조의1, 안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검토한바,
  -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에 “토지·건물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,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
  - 동법 제7조제3항에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,
  - 동법 제63조제3항 제1의2호에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,

- 안 제4조의2제3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였음.
- 안 제8조의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조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를 근거로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안 제8조의2항은 지정구역외의 다른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행업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, 장비등을 지원하도록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나, 의무부과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법령에 명시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의무부과 근거관계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.
- 위 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의무부과 및 긴급재난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서울시 폐관67510-1711(2001. 8)호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, 2001. 9.10 ~ 2001. 9.30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, 안 제4조의2제2항중 “토지·건물 소유자, 점유자 또는”을 “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”으로 하고 안 제8조의1중 “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”를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”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.

### 3. 참고자료

#### □ 관계법령

- 폐기물관리법 제6조, 제7조, 제63조제3항
- 행정대집행법 제2조
- 지방자치법 제139조
-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

# [ 관계법령 ]

## < 폐기물관리법 >

**제6조 (국민의 책무)**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·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(99·2·8)

**제7조 (폐기물의 투기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.

②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99·2·8]

**제63조 (과태료)**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(개정 95·8·4, 99·2·8)

1.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
- 1의2.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3. 삭제 (99·2·8)
4.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
5.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
6. 삭제 (99·2·8)

- 7.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
- 8.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
- 9.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- 10.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11.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**< 행정대집행법 >**

제2조 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 법률(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

**< 지방자치법 >**

제139조 (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)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·조정·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< 자연재해대책법 >**

제45조 (응급조치의 지원등) ①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.